(별첨)



# 조사 · 공동검사 관행개선 및 업무 효율화 방안

2015. 8. 27.

예금보험공사

# 목 차

I. 추진 배경 1
Ⅱ. 조사・공동검사 관행개선 및 업무 효율화 방안 2
1. 기본적 조사・공동검사 틀의 변화    3      가. 사전 부실예방에 중점을 둔 조사・공동검사 추진    3      나. 금융회사의 자율과 책임 강화    4      다. 사전적 서면 분석 강화    5
2. 금융회사 부담완화 6 가. 위험도에 따른 조사·공동검사 기간 단축 운영 6 나. 공유 자료의 우선 활용 등 수검자료 작성 부담 최소화 7 다. 분리통보제 활성화를 통한 조사·공동검사 결과 처리기간 단축 8 라. 객관적 증빙자료 수집 원칙의 확립 9
3. 금융회사 권익보호 및 소통 강화
마. 청렴교육 강화

# Ⅰ. 추진 배경

- □ (□동안의 노력) 예보는 기금관리자로서 보험사고 위험의 관리를 위해 조사 및 공동검사 등 현장확인 업무를 수행
- 금감원과의 업무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**법령** 및 **공동검사 MOU에 정해진 요건과 절차에 따라 업무를 수행**하고 있으며.
-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시정 및 개선을 유도하는 등 금융회사가 느끼는 부담감 축소를 위해 **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・개선**해왔음

<참고> 그 간	의 주요 제도 보완·개선 노력
	· 금감원과 <b>공동검사 MOU 체결</b> ('03년)
조사 및	· 리스크 감축 유도를 위한 <b>컨설팅 및 교육지원 서비스</b> ('03년)
공동검사의	·예보의 리스크감시 역량에 대한 외부 전문가 평가(13년)
틀 개선	· 사전분석 역량강화를 위한 <b>분석역량제고프로그램 운영</b> (15년)
	· 금융회사 자율 시정 및 개선 유도(15년)
	• 유관기관과 <b>정보 공유 MOU 체결</b> ('04년 체결, '09년 확대 체결)
	· <b>현장확인 관련 비용</b> (통신비 등) <b>의 예보 부담</b> ('12년)
금융회사	· 금감원과 단일 검사반 및 검사장 사용, 대형 계열저축은행에
부담완화	대한 검사 주기조정(매년→2년 1회) 등 <b>금융기관 부담완화를</b>
	<b>위한 공동검사 MOU 개정</b> ('14년 개정)
	· 조사공동검사 의견서 교부 (15년)
권익보호 및	· 금융회사 권익보호를 위한 권익보호담당역제 운영(12년)
소통강화	· 부패 방지를 위한 <b>사전 청렴교육제 운영</b> (14년)

- □ (개선 필요성)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, 예보의 조사·공동검사가 금감원과 중복되어 금융회사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불만 상존
- 또한, **저축은행 사태, 동양 사태** 등을 거치면서 **부실 사전 예방**을 위한 **예보의 조사 · 공동검사 실효성 제고 필요성** 제기
- 아울러, 최근 감독당국이 발표한 「검사·제재 개혁 방안」에 상응하여, 예보의 조사·공동검사 업무관행을 재점검 하고, 개선안을 마련할 필요

# Ⅱ. 조사 · 공동검사 관행 개선 및 업무 효율화 방안

# 기본 방향

#### ● 기본적인 조사·공동검사 틀의 변화

- 경영전반·준법성 검사에서 탈피하여 사전부실예방을 위한 보험사고 위험요인 파악에 역량 집중
- O 단순 위법·위규 사항 지적은 지양
- ㅇ 금융회사의 자율적 시정 및 개선 유도에 초점

#### 2 금융회사의 수검부담 완화

- 0 수검 자료의 정형화, 최소화 노력
- ㅇ 점검자 편의 위주의 업무관행을 수검자 위주로 개선

## ❸ 금융회사 소통 및 권익보호 강화

- ㅇ 금융회사 임직원 권익보호 제도 강화
- o 검사원의 부정·부패 및 권한 남용 방지 노력 지속
- ㅇ 금융회사 소통채널 강화를 통한 점검 결과 수용성 제고

# 1 기본적 조사 · 공동검사 틀의 변화

가. 「사전 부실예방」에 중점을 둔 조사· 공동검사 추진

#### (1) 현황 및 문제점

- □ 저축은행 사태를 거치면서 조사·공동검사 시 금융회사 부실화 가능성 및 보험사고의 위험성 점검 강화 등의 노력을 지속해왔으나,
- o 여전히 경영전반·준법성 위주의 검사로, 리스크 감시를 통한 기금 손실 예방이라는 예보의 현장확인 목적 달성에는 한계
- 또한 금융현장에서는 예보의 조사 · 공동검사 결과가 **금감원과** 유**사**하여 **금융회사의 부담 가중**을 초래한다는 문제제기 지속

#### (2) 개선 방안

- □ 기금손실 최소화를 위한 '**사전 부실예방'에 중점**을 둔 점검 추진
- 경영전반·준법성 점검에서 탈피하여 기금손실을 유발할 수
  있는 보험사고\* 위험요인\*\* 파악에 검사 역량을 집중
- \* 예금 등 채권의 지급정지, 영업인허가 취소, 해산·파산 등(예보법 제2조제7호)
- \*\* 보험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영업·자산운용 행태 등(ex. 동양증권의 회사채 불완전 판매사례, 저축은행의 PF대출 쏠림현상)
- □ 예보의 조사 · 공동검사 목적 등에 대한 충실한 사전 설명 등 대·내외 인식 제고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

#### 나. 금융회사의 자율과 책임 강화

#### (1) 현황 및 문제점

- □ 예보는 시정조치 요청권이 부여<sup>\*</sup>된 이후, **시정조치 필요사항**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**금감원에** 시정조치를 **요청** 
  - \* (공동검사) '12년 금융위 설치법 개정. (공동검사·조사) '14년 예보법 개정
- 그러나 **자율시정이 가능한 사항**까지 **시정조치**를 **요청**하는 것은 금융회사의 자율·책임을 강화하려는 최근의 **정책방향에 배치**

#### 참 고 최근 3년간 조사 및 공동검사 후 금감원에 대한 시정조치 요청 현황

구 분	′12년	′13년	′14년	합계
공동검사	55건	125건	95건	275건
단독조사	-	-	99건	99건

<sup>\*</sup> 공동검사에 대한 금감원 앞 시정조치 요청권은 '12.3월(금융위설치법), 단독조사시 금감원 앞 시정조치 요청권은 '14.5월(예보법) 도입

#### (2) 개선 방안

- □ **경미한 위규사항** 등 자율적인 시정이 가능한 부분은 시정조치 요청을 통한 개선보다는 **현장에서 자율시정**을 **유도**
- **시정조치 요청**은 **중대한 사항**\*의 경우 제한적으로 활용
- \* BIS 비율 급락으로 적기시정조치 기준에 해당, 거액의 차·도명 대출 취급 등

#### 사 례 ○○ 저축은행 단독조사 사례

- ◆ 점검기간 : '14.11월
- ◆ 주요 지적사항 및 처리 결과 (시정조치 요청 대신 현장개선 유도)
- 유동성 비율 미준수(일시적으로 100% 미만) → 현장개선(유동성 비율 모니터링 강화)

#### 다. 사전적 서면 분석 강화

#### (1) 현황 및 문제점

- □ 저금리 지속, 시스템리스크 규제 강화<sup>\*</sup> 및 보험업권 IFRS 4 2단계 시행 등 금융업권의 다양한 리스크 요인이 상존
  - \* 시스템적 중요금융회사(SIFI) 선정, 사전정리계획(RRP) 제도 도입, 사전 손실부담안(Bail-In) 등
- 이러한 **리스크 요인에 대한 사전 분석**과 **조사 · 공동검사 간 연계성**이 **낮아** 금감원 등과 차별화된 점검 결과 도출이 어려움

#### (2) 개선 방안

- ① 리스크 요인 사전분석과 조사 · 공동검사의 연계 강화
- 부실화 및 기금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**업권별 핵심 리스크 요인** 및 **개별 금융회사의 재무현황** 등에 대한 **심도 있는 분석** 실시
- 현장확인시 사전 분석 결과 발견된 문제점 위주로 집중 점검
- ② 핵심 리스크 요인에 대한 분석역량 강화
- 내부 분석역량강화프로그램\* 운영, 외부 전문가 교류 확대 (업권별 포럼 운영) 등을 통해 주요 이슈 파악 강화
- \* 업권별 주요 이슈 및 개별 금융회사 분석·보고 실시(주 1회)
- **전문인력**(박사, 애널리스트 등) **확충<sup>\*</sup>**, **직무전문가 확대** 운영<sup>\*\*</sup>, 대·내외 연수 내실화 등을 통해 직원의 전문성 지속 제고
- \* (현행) 사전분석 전문인력 1명 → (개선) '15.6월 현재 3명(추가 확대 예정)
- \*\* 5년 이상 직무전문가 확대 운영 (현행) 3명 → (개선)5~6명 수준

# 2 금융회사 부담완화

#### 가. 위험도에 따른 조사 · 공동검사 기간 단축 운영

#### (1) 현황 및 문제점

- □ 예보는 관련 법령 및 공동검사 MOU에 의거하여 엄격한 요건에 따라 조사 · 공동검사 업무를 실시\*
  - \* 저축은행업권 제외시 조사·공동검사 비율은 연간 2% 미만(3~4개사/부보 금융기관 220개사)
- 그럼에도 최근 **금감원의 현장검사 축소방침**, **저축은행 등의** 수검부담 완화 건의 등 예보의 조사·공동검사 최소화 요구 증대

#### 참 고 최근 3년간 업권별 조사 및 공동검사 업무 실시 현황 구 분 ′12년 '13년 ′14년 '15.3월 말 한계 9 18 9 37 수 계 은행 1 1 2 공동검사 보험 2 1 금융투자 1 3 1 6 27 저축은행 6 14 단독조사 저축은행 8 11 17 38

29

26

17

75

#### (2) 개선 방안

한계

- □ 조사 · 공동검사 대상 선정기준이 관련 법령과 MOU에 정해져 있어 임의적인 점검 대상 축소는 곤란한 점을 감안하여,
- 사전 분석을 통해 파악된 보험사고 위험성 정도에 따라 현장확인 기간을 단축운영(공동검사의 경우, 금감원 일정 등을 고려하여 조정)
- \* (현행) 평균 3주 내외  $\rightarrow$  (개선) 보험사고 발생가능성이 낮은 경우 평균 2주 내외

- 나. 공유 자료의 우선활용 등 수검자료 작성 부담 최소화
- (1) 현황 및 문제점
- □ **공동검사**의 경우, 금감원을 통한 **사전 일괄 자료요청**, **자료의 공유** 등 금융회사 부담 축소를 위한 장치 旣 마련
- **단독조사**의 경우, 예보의 시정조치 요청 후 동 사항에 대한 금감원의 추가 확인검사로 금융회사의 이중수검 부담<sup>\*</sup> 발생
- \* 금융위 현장방문시 저축은행의 제도개선 건의 사항
- (2) 개선 방안
- ① 공유 정보 등의 우선사용 및 추가 요청자료 최소화
- 조사시 **금감원과 공유·공시 자료**\*를 최대한 활용
- \* 여신건전성 점검시 금감원과 공유하는 여신상시감시자료를 우선 활용
- 요청자료 서식은 금감원 검사 서식과 통일(금감원 검사매뉴얼) 하고, 점검기간 중 자료요청은 최소화
- ② 금감원에 송부하는 예보의 지적사항별 증빙자료 정형화
- 금감원과 협의를 통해 **업권별 시정조치 요청사항 유형별**로 금감원이 필요로 하는 **중빙자료**의 **종류. 서식** 등을 **정형화**\*
- \* 금감원이 중복·장기간의 확인검사를 실시하지 않을 정도의 자료요구수준
- → 금감원의 **추가 검사로 인한** 금융회사의 **자료제출 부담**을 **완화**

- 다. 분리통보제 활성화를 통한 조사 · 공동검사 결과 처리기간 단축
- (1) 현황 및 문제점
- □ 예보의 조사·공동검사 결과가 금감원 내 절차를 거쳐 **금융회사에** 최종 통보되기까지 평균 9개월의 장기간이 소요
  - \* 예보는 금감원에 시정조치를 요청하는 경우(조사·공동검사 종료 후 평균 2~3 개월 이내) 금융회사에 동 내용을 참고용으로 통보
- o 처리결과 장기화에 따라 금융회사의 **개선조치가 지연** 또는 **실기** 우려가 있으며, 금융회사 임직원의 **심리적 불안감 장기간 지속**



#### (2) 개선방안

- □ 경영개선을 위해 **신속한 시정이 필요한 경우**\*, 결과 확정 이전에 해당 건을 분리하여 통보하도록 금감원에 요청하는 제도를 활성화 ('14년 공동검사 MOU에 기 반영)
  - \* (ex.) 채권회수가액 감소 방지를 위한 신속한 채권보전조치 실시 등
  - \*\* 통보 소요기간 단축: (현행) 평균 9개월  $\rightarrow$  (개선) 평균 4 $\sim$ 5개월 예상

#### 라. 객관적 증빙자료 수집 원칙의 확립

#### (1) 현황 및 문제점

- □ **관행적**으로 이루어지는 **확인서 · 문답서 징구**가 금융회사 임직원의 **식리적인 부담감**을 가중
- 기재내용에 관하여 금융회사 임직원측의 이견이 존재하는 경우 불필요한 마찰 야기 및 조사 · 공동검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 저하 우려

#### 참 고 관련규정상 확인서 및 문답서 징구 사유

◆ 확인서 : 지적사항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하여 관련자로 하여금 그 사실의 존재를 입증하게 하는 경우

◆ 문답서 : 확인서에 따라 명백하게 밝혀지지 아니하거나 사실확인에 있어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는 사항에 관해 관련자의 답변을 듣고자하는 경우

#### (2) 개선 방안

- ① 객관적 증빙자료 수집 원칙 확립
- 지적사항에 대한 **입중책임이 조사(검사)원에 있음**을 명확히 하고, 기안문서, 전표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한 증빙원칙 확립
- ② 확인서 등 관련 규정 정비
- '15년 초부터 既 시행 중인 확인서·문답서 미징구 원칙을 규정에 명시
- 객관적 증빙 자료로 확인되지 않는 사항의 경우, 점검반장 명의의 의견서를 교부하고, 해당 금융기관에 의견진술 기회\*를 부여
- \* 변호사 등의 조력을 받을 권리. 반대증거의 제시권리 등을 사전 설명

### 3 금융회사 권익보호 및 소통 강화

#### 가. 권익보호담당역 확충 등 권익보호제도 실효성 제고

#### (1) 현황 및 문제점

- □ 예보는 '12년부터 **사내변호사**를 **권익보호담당역으로 지정**하여 금융회사 임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권익보호제도를 운영
- 조사 · 공동검사 시 대상 금융회사에 **동 제도**를 **안내**하고 있으나, 실제 신청사례가 전무

#### 참 고 권익보호제도 개요

- ◆ 의의: 조사 및 공동검사 대상 금융회사나 그 임직원이 점검 실시 과정에서 위법 부당한 조사 등이 진행되거나, 절차상 중요한 흠결이 있는 경우 예보의 권익보호담당역(사내 변호사 중 1인으로 지정)에게 권익 보호를 신청하는 제도
- ◆ 권익보호담당역의 역할: 조사 및 공동검사 기간 중 권익보호제도에 대한 안내, 권익보호신청 사항의 정당성이 인정될 경우 점검의 중지 또는 시정요청 등

#### (2) 개선 방안

- □ 권익보호담당역을 확충(현재 1인 → 2인 이상)하고, 모든 조사 · 공동검사 대상 금융회사에 대해 직접 방문 · 안내 실시
  - \* '14년 34%(9개사/26개사) 방문안내 → '15년부터 100% 방문안내 실시
- □ 감사실의 암행감찰 및 피검기관 임직원 면담/설문조사 등을 지속 실시함으로써 권익보호제도의 실효성 제고

#### 나. 사외이사 면담 확대 등 대상 금융회사와의 소통 강화

#### (1) 현황 및 문제점

- □ 조사·공동검사 기간 중 담당부서장 등이 해당 금융회사 임직원 들과 의견을 교환하는 **의견청취제도**를 **시행중**에 있으나,
  - \* 통상 점검 개시 및 종료시 1~2회 임의 실시
- o 점검기간 중 소통노력이 부족하고, 금융회사의 의견이 충분히 수용되지 않는다는 불만 사항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음

#### (2) 개선 방안

- ① 조사·공동검사 기간 중 「**수시 간담회**」 개최
- 충분한 의견 교환 및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점검기간 중 조사· 공동검사 반장과 해당 금융회사 감사 등과의 간담회를 의무화\*
- \* 점검 진행상황 및 발견된 문제점을 설명하여 점검기간 중 자율개선을 유도하고 반론기회를 부여
- ② 조사 · 공동검사 종료 전후 「사외이사 면담」실시
- 조사·공동검사 종료 전후 주요 임직원 뿐 아니라 **사외이사**에게도 점검 결과 설명, 건의사항 및 의견 수렴 등을 위한 면담을 실시함으로써 금융회사에 대한 **건전한 내부통제**를 **유도**
- \* 공동검사의 경우, 금감원 면담여부 등을 고려하여 실시하고, 기존 경영진 면담 등은 유지

#### 다. 금융회사 임직원의 의견진술권 강화

#### (1) 현황 및 문제점

- □ 금융회사가 조사·공동검사 결과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, 이를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절차가 미흡한 실정
- 이 (조사) 서면(전산시스템)에 의한 의견 접수 원칙
- \* 실무적으로는 면담 및 유선통화에 의한 방식도 활용되고 있음
- ㅇ (공동검사) 의견 전달 관련 규정 미비

#### 참 고 금융회사 의견 진술 제도 유사 사례

#### ◆ 예금보험공사 MOU 심의의원회

: MOU 심의위원회에 당해 금융기관 관련 임직원 및 그 밖에 참고인이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(경영정상화이행약정 관리규정 시행세칙 제15조)

#### ◆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

: 제재심의위원회에 당해 금융기관의 장, 관련 임직원, 기타 참고인이 출석 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(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시행세칙 제57조)

#### (2) 개선 방안

#### ① 금융회사의 의견 진술권 강화

- 금융회사가 희망할 경우, 조사 · 공동검사 결과 심의과정에서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 또는 서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허용
- ②「결과 진행상황 통지제도」도입
- 조사 · 공동검사 완료 후 **내부 절차의 주요 절차별 진행경과**\*를 해당 금융회사에 **통보**하는 제도 도입
- \* 시정조치 요청사항의 심의회 상정 사실 및 의견 진술권 안내 등

- 라. 「시정조치 심의위원회」설치를 통한 객관성 및 공정성 제고
- (1) 현황 및 문제점
- □ 현재 조사·공동검사 후 그 결과에 대하여 실시부서에서 각각의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 심의결과의 객관성·공정성 확보에 한계
- 특히 '14년 금감원에 대한 시정조치 요청권 신설을 감안할 때,
  대외 파급효과가 큰 시정조치 요청사항의 심의 강화 필요성 증대
- (2) 개선 방안
- □ **실시부서와 독립된 심의기구**로써 「**시정조치 심의위원회**」를 설치하여, 보다 객관적 심의 실시
- 아울러 그 실질이 동일한 조사·공동검사의 결과 심의절차를 일원화하여 결과처리의 효율성 제고

#### 참 고 조사·공동검사 결과 심의기구 개선 방향 조 사 공동검사 조사실무회의 공동검사 협의회 • **위원장**: 실시부서장 • **위원장**: 리스크1부장 • **위원**: 실시부서기획팀장, 他 권역 • **위원**: 리스크2부장, 은행팀장, 보험 조사·공동검사 실시 담당팀장, 팀장, 금투팀장, 저축은행기획팀장, 부실책임조사기회팀장, 변호사 저축은행공동검사 업무수행팀장 • 심의사항: 보고서체계, 시정조치 • 심의사항: 보고서체계, 시정조치 요청사항의 적정성 등 단독조사 요청사항의 적정성 등 공동검사 결과 전반 결과 전반 ① 조사/공동검사부서 실무회의 ② 시정조치 심의위원회(신설) 개 • **위원장**: 리스크관리 담당 임원 • 구성: 조사/공동검사 부서장 및 해당부서 팀장 • 위원: 리스크관리기획 부서장(부위 원장), 리스크관련 부서 기획팀장, • 검토사항: 보고서체계 등 조사/공동 리스크 담당 사내 변호사 검사 결과 전반 신의사항: 시정조치 요청 예정사항

#### 마. 청렴교육 강화

#### (1) 현황 및 문제점

- □ 예보는 조사·공동검사시 검사원의 부패방지 및 청렴도 제고를 위한 사전 청렴교육 및 모니터링 활동을 시행 중
- o 이러한 노력으로 그간 부정·부패 사례는 없었으나, 조사·공동 검사의 특성(대면접속)을 감안하여 청렴도 제고방안을 더욱 강화할 필요



#### (2) 개선 방안

- □ **청렴 교육 및 사적 이해관계고지** 등을 **규정에 명시**하여 청렴도 제고 노력을 강화
  - \* 실시부서장 재량으로 점검 착수전 1회 교육 → 규정으로 의무화하여 점검착수 전에는 부서장이 1회 이상, 점검 중는 점검반장이 수시 실시
- □ **청렴의무 위반자**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에 따른 **징계조치**<sup>\*</sup>를 **철저히** 이행하고, **현장확인 업무**에서 원칙적으로 **배제**(One Strike Out)
  - \* 비위 유형에 따라 징계를 취하되, 직무관련 금품을 수수하고 위법·부당 처분시 금액 불문 면직 처리
- □ 청렴교육 교재의 지속적 업데이트 및 외부전문가 초빙 교육 지속적으로 실시

# Ⅲ. 향후 추진계획

주요 추진업무	시행 시기
1. 기본적 조사 및 공동검사 틀의 변환	
□ 사전 부실예방에 중점을 둔 조사 및 공동검사 추진	지속 추진
□ 금융회사의 자율과 책임 강화	지속 추진
□ 사전적 서면 분석 강화	지속 추진
2. 금융회사 부담완화	
□ 위험도에 따른 조사 및 공동검사 기간의 단축 운영	'15년 하반기
□ 공유 자료의 우선 활용 등 수검자료 작성 부담 최소화	지속 추진
□ 분리통보제 활성화를 통한 조사 및 공동검사 결과 처리 기간 단축	'15년 하반기 (금감원협조필요)
3. 금융회사 권익 보호 및 소통 강화	
□ 권익보호담당역 확충 등 권익보호제도 실효성 강화	기시행(′15.6)
□ 사외이사 면담 확대 등 대상 금융회사와의 소통 강화	'15.9월 시행
□ 금융회사 임직원의 의견진술권 강화	'15.9월 시행
□ 시정조치 심의위원회 설치	'15.9월 시행
□ 청렴 교육 절차 등 규정화	'15.9월 시행

#### <첨부>

# 조사 · 공동검사 방식 개선 및 효율화 방안 주요내용

#### 종 전 개선 방안 • **사전 부실예방**에 중점을 둔 점검 • 경영사항전반 포괄적 점검 조사 및 • 외부 위험요인 분석 및 공동검사 • 위험요인 **사전 분석** 강화 현장확인 연계 미흡 틀의 변환 ● 금감원 앞 시정조치 요청을 ●금융회사의 **자발적 개선** 유도 통한 개선 유도 • 금감원 공유정보 및 공시 정보 • 현장확인 전 수검자료 일괄 요구 우선 활용 보험사고 위험성 정도에 따라 • 자산규모 등 외형에 따른 점검기간 설정 점검기간 단축 • 확인서 · 문답서 대신 금융회사 • 관행적 확인서 문답서 징구 조사·공동검사 의견서 교부 ('15년초 폐지) 부담완화 - 객관적 증빙자료 수집 원칙 확립 금감원협의를 통해 지적사항별 • 예보 단독조사 후 금감원 증빙자료를 정형화하여 확인검사 확인검사 부담 완화 • 조사 및 공동검사 결과의 시급한 시정필요사항의 일괄 통보 분리통보 실시 ● 실시부서장 재량의 청렴 교육 • 점검예절/청렴교육 의무화 · 규정화 • 권익보호담당역 1인 운영 • 권익보호담당역 및 담당직원 확충 금융회사 - 서면 또는 현장방문선택 - 원칙적 현장방문 실시 임직원 ● 점검기간 중 상근 임직원 위주의 • 점검기간 중 임직원 **수시간담회** 권익보호 비정기적 면담 개최 및 사외이사 면담 실시 • 서면 위주의 의견진술 기회 부여 • 싞의시 출석·서면의견 진술 가능 소통강화 ● 결과 확정 후 통보 • 결과 진행사항 통지제도 도입 • 조사·공동검사 실시부서의 ● 실시부서와 **독립된 결과심의** 결과 심의 제도 도입